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 법무부장관(의료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병원약사회장, (사)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여름 사무관 대결 2021. 12. 16. 이인선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7409 (2021. 12.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8 팩스번호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 / 대국민 공개